
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-3351호

#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상황관리 대체인력 선발 공고

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할 구급상황관리 대체인력(기간제근로자)

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3일

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

## I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등급	채용기간	채용분야	인원	자격요건	근무예정부서
기간제 근로자	'22.02.03. ~ '22.08.31.	구급상황관리 대체인력	2	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(면허)증 소지자	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

## II 응시자격 요건

구 분	주 요 내 용
성별 및 연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성별 제한 없음</li><li>• 연령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</li></ul>
거 주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거주지 제한 없음</li></ul>
자격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)</li><li>• 간호사 소지자 (의료법 제7조 적용)</li>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(결격사유) 준용</li></ul> <p>※ <u>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</u></p>

### III

##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

### ○ 전형절차



- 신청서, 이력, 자격·경력, 자기소개 등
- ※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

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
-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·기술, 태도 등을 평가
-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#### 면접시험의 평정요소

※ 동순위자 발생 시 대체인력 경력자, 고령자 순으로 결정

-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
- ②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③ 의사발표 정확성·논리성
- ④ 대체인력(구급대원)으로서의 적성
- ⑤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등

### ○ 전형일정

전형일정	일시	비고
모집공고	2022. 01. 03. ~ 2022. 01. 14.	•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게시 <a href="http://119.busan.go.kr">http://119.busan.go.kr</a>
접수기간	2022. 01. 06. ~ 2022. 01. 14.	• 제출방법 : 이메일 - 주소 : sh850318@korea.kr * 접수마감일 18시 한에 한함
서류심사 발표	2022. 01. 18.	•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2022. 01. 21. 14:00	• 일시 : 2021. 01. 21. 14:00 • 장소 : 부산소방재난본부(별도 통보) *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
합격자 발표	2022. 01. 25.	•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게시
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	2022. 01. 28.	•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

## IV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
- 이력서 1부 ※ 기재된 모든 증명사항은 증빙자료 첨부
-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
-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
- 자격(면허)증 및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, 의사상자 증명서 1부 ※ 해당자에 한함
- 최종학력증명서 1부 ※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신규채용에 준함) ※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
- 코로나19 음성확인서 ※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
- 야간근무자 배치전건강검진(검진기관 ‘별도안내’) ※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

## V 근무조건

구 분	주 요 내 용
근로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계약기간: ‘22.02.03. ~ ‘22.08.31.(예산 확보 시 계약연장 가능)</li> <li>*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, 예산소진 및 휴직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</li> <li>● 근무형태 : 주52시간 내 4조 2교대(구급상담요원 보조)</li> </ul>
근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</li> </ul>
보수 및 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보수(월) : 약 250 ~ 300만원 내외</li> <li>※ 임금지급 기준 : 10,868원(시간급) - ‘22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결정액</li> <li>● 지급일 : 근로 익월 25일(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</li> </ul>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방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(응시자격 등의 기준)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</li> <li>-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(호봉의 재획정)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●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</li> </ul>

## VI 우대사항

### ○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

구 분	우 대 사 항
배점 외 가산점 부 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% 또는 5% 부여 ※ 선발예정인원의 30% 내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<b>☞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li> <li>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li> <li>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</li> <li>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li> <li>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li> <li>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</li> </ul> </div> </li> <li>● 의사상자 등 대상자 : 의사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3% 부여 ※ 선발예정인원의 10% 내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<b>☞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</li> <li>▲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</li> <li>▲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</li> </ul> </div> </li> </ul> <p>※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,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</p>

### ○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대

## VII 기타유의사항

### ○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li> <li>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</li> <li>-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</li> </ul>
---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차점자 중 고득점자 순에 의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중도퇴사 할 경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모집 공고 없이 차점자 중 고득점자 순에 의거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 예정(기준)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할 예정입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(051-760-31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